

의안 번호	제3633호
----------	--------

##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05월 23일, 한중우 의원
-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06월 02일
- 다. 상 정 일 자 : 2025년 06월 02일
- 라. 의 결 일 자 : 2025년 06월 02일

### 2.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제52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이행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규정이 삭제된 조항 정비를 위해 회의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회의록 공개기한 규정 마련(제48조 제4항 및 제5항)
-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 고지(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 회의 실시간중계 근거 신설 및 중계 대상 등을 포함한 운용 규정 마련(제81조)
- 경미한 징계대상행위 본회의 바로 부의 조항 삭제(제79조)

### 4.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 규정이 삭제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해당 권고는 전국 기초의회에 공통으로 적용된 사항으로 다수 지방의회에서 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에 본 규칙안은 권익위 권고사항 및 상위법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김포시의회 회의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 의정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48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명시하여,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8조·제78조의2·제79조에서는 방청 제한 사유 및 그에 대한 고지, 방청인 준수사항 등을 명시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방청인의 권리보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1조에서는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중계 대상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비공개 회의를 제외한 회의 공개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기반의 의사공개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79조 경미한 징계대상행위 본회의 바로 부의 관련 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2021. 1. 12. 전부개정 / 2022. 1. 13. 시행)에 따른 법조문 정비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체계·형식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주문사항 : 없음

11. 첨부서류 : 원안 붙임

#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 중 “**삼사보고**” 를 “**심사보고**” 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면저**” 를 “**먼저**” 로 한다.

제4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또는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은 회기 종료일 후 30일 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의원에게 회의록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

## 제 4 장 위원회

제83조를 제86조로 하고,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를 각각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로 하며, 제78조를 제80조로 하고,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및 제8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흥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음주상태에 있는 자

3. 그밖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8조의2(방청의 제한 고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제79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 행위
5.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6.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1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로 결정된 회의를 제외하고, 의회의 회의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할 수 있다.

②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청문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로 하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비공개로 결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상 자료를 임의로 편집할 수 없다.

## 제 9 장 징 계

제80조(종전의 제7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종전의 제79조)제5항을 삭제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 (의안의 회부) ① ~ ⑥ (생략)</p> <p>⑦본회의는 위원장의 <u>삼사보고</u>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p>	<p>제20조 (의안의 회부)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u>심사보고</u>----- ----- ----- -----.</p>
<p>제43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p> <p>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u>먼저</u> 표결한다.</p> <p>2. · 3. (생략)</p> <p>② (생략)</p>	<p>제43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 ----- -----.</p> <p>1. ----- <u>먼저</u> ----- -----.</p> <p>2.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8조(회의록의 기록·관리 및 공개) ①·② (생략)</p> <p>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p>&lt;신 설&gt;</p>	<p>제48조(회의록의 기록·관리 및 공개)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또는 공개되는 회</p>

<신 설>

<신 설>

<신 설>

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회의록은 회기 종료일 후 30일 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의원에게 회의록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

제78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음주상태에 있는 자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8조의2(방청의 제한 고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 설>

제78조(녹음·녹화등) ① ~ ③ (생략)

④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79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 행위
5.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6.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0조(녹음·녹화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로 결정된 회의를 제외하고, 의회의 회의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할 수 있다.
- ②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청문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로 하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비공개로 결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상 자료를 임의로 편집할 수 없다.

제7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④  
(생략)

⑤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80조·제81조 (생략)

제83조 (생략)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83조·제84조 (현행 제80조 및 제81조와 같음)

제86조 (현행 제83조와 같음)